

제 호			
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			
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번호 :)	
관련사항	대상구분	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	의
	보훈번호	학교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	
제출처(학교명)		용도	(입학금, 수업료) 면제용
이미 면제받은 수혜 내역	입학금([]받음, []안받음) 학기 수() 또는 학점()		
<p>위 사람은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 다만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5px;">직인</div>			
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.			
※ 위 학생에게 퇴학·정학·휴학·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를 관할 보훈(지)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			
우편번호	- / 주소	/ 전화 ()	- / 전송 () -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 담당자	(전자우편)